

청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111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5028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11166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6.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임야 249㎡'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다만 계약서(갑제2호증)는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낮추어 작성하였다.

나. 위 C 임야에 대한 토지대상상의 면적은 24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9. 4. 2. 면적정정을 사유로 하여 90㎡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위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총 면적이 249㎡인 줄 알고 매수한 것인데 매수 후 실제 측량을 하여 보니 그 면적이 90㎡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별 공시지가 126, 000원 /때으로 산정한 정당한 거래가격인 11,340,000원(계산 : 126,000원X 90㎡)만 수령하여야 함에도 5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은 그 차액 38,660,000원을 편취한 것이거나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그 중 32,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기재 면적은 위 계약서의 기재된 면적과 동일한 249㎡였던 점, 원고는 건물을 짓기 위한 통행로로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목적물을 특정하면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당사자가 그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다고 보여져 이를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라 보기 어려우며 수량지정 매매의 경우라도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이와 관련하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거나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지영